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5.

제안자 : 정 상 혁 의원의외

### 1. 수정이유

- 도로과 소관 사무중 위임하려는 재산(도로)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위임하려는 “도유 행정재산(도로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” 사무중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도로)으로 수정함.  
(안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)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의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도로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